

국 토 교 통 부

시 정 요 구

제 목 터널 가시설물(호이스트 크레인) 설계변경 미이행

기 관 명 부산광역시

내 용

부산광역시(○○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총사업비의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14. 11. 7. 경기도 ○○시 ○○구 ○○면 ○○로 82에 있는 ○○○○(주) (대표자 ○○○)와 1개사¹⁵⁸⁾와 ‘○○터널 접속도로(○○축) 건설공사(3공구)’를 총 공사부기금액 55,275,000,000원¹⁵⁹⁾으로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1. 7. 착공하여 2020. 3. 11.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제6절제1(설계변경)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같은 기준 같은 절 제5(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58) 부산광역시 ○구 ○○대로 360 ○○○○(○○동)에 있는 (주)○○○○○○○ (대표자 ○○○)

159) 2016. 12. 20. 총공사부기금액이 63,988,000,000원으로 변경되었음

한편 부산광역시에는 위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터널의 굴착을 시점부와 종점부 양방향에서 굴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지하차도와 연결되는 ○○터널 시점쪽에는 터널 굴착 등으로 발생하는 토석을 반출하기 위하여 호이스트 크레인 1개소를 설계에 반영하였다.

그런데 부산광역시(○○본부)에서는 2016. 11. 9. 용지보상 지연 등으로 ○○터널 종점 쪽에서 시점 쪽으로 일 방향으로만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굴착계획을 변경하여, ○○터널 시점쪽에 설치할 계획이던 호이스트 크레인을 설치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므로 설치가 필요 없는 호이스트 크레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어야 했는데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설치가 필요 없는 ○○터널 시점 쪽의 호이스트 크레인 1개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있어 호이스트 크레인 공사비 365,197,000원 상당이 부당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시정] 설치가 필요 없는 호이스트 크레인 1개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비 365,197,000원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